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 2452

제안연월일 : 2022. 7. .

제 안 자 : 오지연 의원

1. 수정이유

○ 제정 조례안 제2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인 「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는 2021년 3월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제정으로 폐지된 조례이기에, 인용된 조례 제명을 바르게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제정안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 수정(안 제24조)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4조 중 "「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"를 "「하남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」"로 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』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24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	제24조(수당 등)
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	
예산의 범위 에서 「하남시각종위	[하남시 각종 위원회
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	설치 및 운영 조례」
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	
수 있다.	